

투자위험등급 :
1등급
[매우 높은 위험]

트러스톤자산운용(주)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에서 5등급(매우 낮은 위험)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간이투자설명서

이 투자설명서는 **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**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**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수익증권**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(AL487)
2. 집합투자기구 분류 : 투자신탁, 증권(주식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
3. 집합투자업자 명칭 : 트러스톤자산운용(주) (02-6308-0500)
4. 판 매 회 사 : 각 판매회사 본 · 지점
(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(www.trustonasset.com)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5. 작성 기 준 일 : 2014. 7. 14.
6.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: 2014. 7. 21.
7. 모집(매출) 증권의 종류 및 수 :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
8. 모집(매출) 기간(판매기간) :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
9. 존 속 기 간 :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
10.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
 - 가. 집합투자증권신고서
전자문서 : 금융위(금감원) 전자공시시스템 → <http://dart.fss.or.kr>
 - 나. 투자설명서
전자문서 : 금융위(금감원) 전자공시시스템 → <http://dart.fss.or.kr>
서면문서 :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

※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

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,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,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4. **원본손실위험,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(일괄)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5.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, 특히 은행, 증권회사,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(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)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6. 집합투자증권은 **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**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**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**
7.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.
8.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.

간이투자설명서

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

1. 투자목적

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KOSPI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달성을 추구합니다.

※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.

※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3년 7월 21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www.trustonasset.com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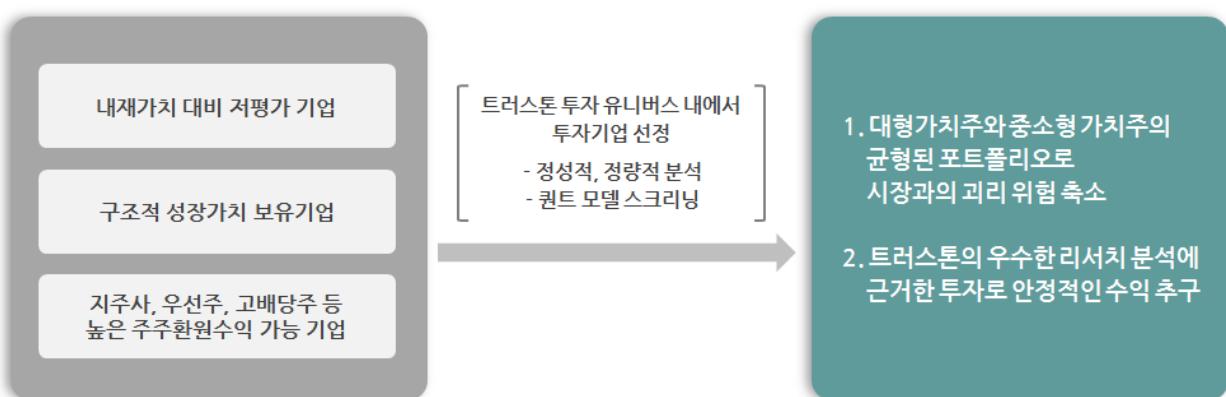
1) 기본 운용전략

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%이하를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.

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

□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모투자신탁[주식]의 투자전략

안정적 현금 흐름과 산업내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비교지수*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.



1. 저평가 영역 기업

- : 트러스톤의 내부 리서치 조직의 정성적&정량적 분석을 통해 저평가 기업군 선정
- 정성 분석 : 재무제표상 파악이 어려운 특징 분석(숨겨진 자회사 가치, 장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, 부채의 실제가치등)
 - 정량 분석 : 트러스톤 투자전략팀의 다각도 퀀트 스크리닝을 통한 분석 (단순 저 PBR(주가순자산비율), 저 PER(주가수익비율), 자산가치 증가종목, 현금흐름 개선종목, 부채감소종목 등을 분석)

2. 구조적 성장 가능 기업군

: 상표 충성도, 경영 관리,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선정

3. 지속적 주주환원이 가능한 기업

: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주주환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 선정

- 연간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기업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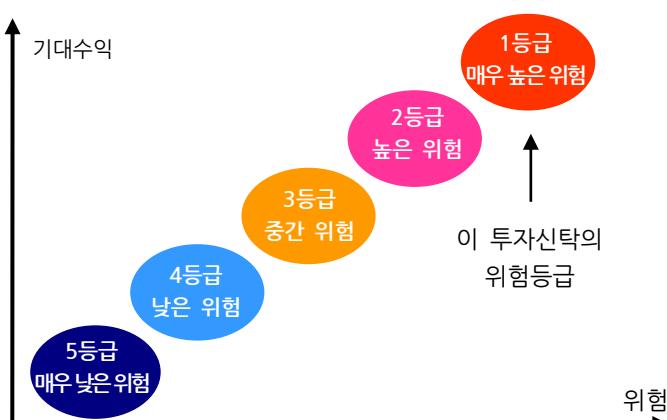
- 미래 높은 주주환원이 예상되는 기업 선택

* 비교지수 : KOSPI × 100%

3. 주요투자위험

구분	투자위험의 주요내용
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	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주요 운용위험	투자신탁재산을 주식,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또한,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,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	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순자산가치 변동위험	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 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
환매연기위험	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4.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

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% 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(주식형)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.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5. 운용전문인력

(단위 : 억원, 개 / 기준일 : 2014. 6. 30.)

성명	출생연도	직위	운용현황	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
		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 운용 자산 규모	
전호준	1980년	책임 운용역 (과장)	11	12,235	<p>학력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 졸 포항공대 기술경영 석사</p> <hr/> <p>경력 09.07~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AI본부</p> <hr/> <p>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</p>

- *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주식운용 AI 본부에서 담당하며,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.
- *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: 해당사항 없음
- *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. 투자실적 추이[연도별 수익률]

-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.

II. 매입 · 환매 관련 정보

1. 보수 및 수수료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수수료 구분	수수료율		
	C	Ce	S-P
펀드코드	AL485	AL486	AO774
가입자격	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 계좌”의 가입자 중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 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	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 계좌”의 가입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	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“연금저축계좌”的 가입자 중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 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 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 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(단위 : %)

구분	펀드코드	집합투자업자	판매회사	신탁업자	사무관리 회사	기타비용	총보수 비용	합성보수 비용	증권거래 비용
C	AL485	0.540	0.950	0.015	0.015	0.017	1.537	1.537	0.783
Ce	AL486	0.540	0.470	0.015	0.015	0.017	1.057	1.057	0.783
S-P	AO774	0.540	0.350	0.015	0.015	0.017	0.937	0.937	0.783
지급시기		매 3개월 후급						사유발생시	사유발생시

주 1)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·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.

주 2) 총보수 ·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 · 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
주 3)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

주 4) 합성 총보수 ·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(자투자신탁)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(자투자신탁)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·비용 차감후 기준)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 ·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.

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·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

(단위:천원)

구분		1년후	3년후	5년후	10년후
C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161	501	863	1,883
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)	161	501	863	1,883
Ce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111	346	600	1,326
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)	111	346	600	1,326
S-P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98	307	533	1,182
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)	98	307	533	1,182

주 1) 투자가 1,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 ·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·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.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,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 · 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.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,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과세

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

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·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
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
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공제제도	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*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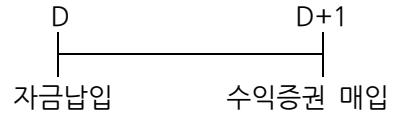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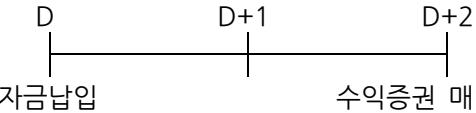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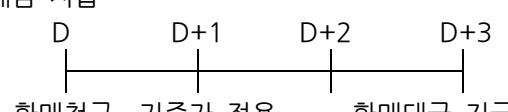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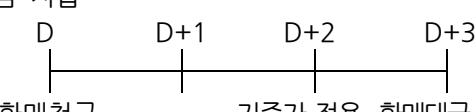
* **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.**

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·환매 절차

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

구분	내용
기준가격 산정방법	당일의 공고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기준가격 공시장소	집합투자업자(www.trustonasset.com) ·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· 판매회사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.

나. 매입 및 환매 절차

구분	오후 3시 이전	오후 3시 경과후
매입	<p>자금을 납입한 영업일(D)의 다음 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 	<p>자금을 납입한 영업일(D)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 
환매	<p>환매청구일(D)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환매 대금 지급</p> 	<p>환매청구일(D)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환매 대금 지급</p> 

IV. 요약 재무재표

-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